

대구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1가단1259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남 담당변호사 장익현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배동천

변 론 종 결 2021. 12. 21.

판 결 선 고 2022. 1. 11.

주 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법 등기국 2020. 9. 8. 접수 제14499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 C(대표자 사내이사 B)의 보증의뢰에 따라 동 회사와 다음과 같이 각 보증을 약정하였다.

※ 위 연대보증인들 중 B를 제외한 나머지 연대보증인들은 모두 보증채무면제임다. 위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주) C는 물론 그 연대보증인도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기타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주) C에게 신용보증사고, 가압류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주) C는 위 각 약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증서를 발급받아 각 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구분 발급일자 보증번호 보 증 원 금 보증기한 대출과목 대출은행 대출일시 대 출 금 액①

2009.12.22. F 195,500,000원 2010.12.22. 일반자금 G은행 2010.1.4. 230,000,000원

(그 후, 일부 해지로 보증 잔액 175,950,000원)(그 후, 2021.12.10.로 보증기한 변경)

② 2012.12.20. H 170,000,000원 2013.12.20. 일반자금 G은행 2012.12.21. 200,000,000원

(그 후, 일부 해지로 보증 잔액 153,000,000원)(그 후, 2021.12.10.로 보증기한 변경)③

2018.3.13. I 90,000,000원 2019.3.13. 일반자금 G은행 2018.3.19. 100,000,000원(그 후,

일부 해지로 보증 잔액 85,000,000원)(그 후, 2022.3.11.로 보증기한 변경)④ 2018.3.13. J

90,000,000원 2019.3.13. 일반자금 G은행 2018.3.19. 100,000,000원(그 후, 일부 해지로 보증

잔액 85,000,000원)(그 후, 2022.3.11.로 보증기한 변경)⑤ 2019.6.18. K 225,000,000원

2020.6.18. 중소기업자금 중소기업은행 2019.6.18. 250,000,000원

(그 후, 일부 해지로 보증 잔액 212,500,000원)(그 후, 2021.8.17.로 보증기한 변경)

⑥ 2020.6.22. L 225,000,000원 2021.6.22. 중소기업자금 중소기업은행 2020.6.22.

250,000,000원마. (주) C1) 는 2021. 3. 20. 원금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위 회사 사업장(대구 수성구 M)은 이미 2020. 6. 5.부터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까지 당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보증약정서 제5조에 기재 (주) C에게 이 사건 채권을 사전구상할 수 있게 되었다.

바. 원고가 (주) C의 보증인으로서 G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해야 할 금액은 합계 936,450,000원(= 175,950,000원 + 153,000,000원 + 85,000,000원 + 85,000,000원 + 212,500,000원 + 225,000,000원)이며, (주) C에 대한 구상채권 확보를 위해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회수 잔액은 3,465,200원이다.

사. 따라서 (주)C,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9,915,200원(= 대위변제 예정금액 936,450,000원 + 대지급금 3,465,200원) 및 그 중 936,450,000원에 대한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 한편, (주) C의 연대보증인인 B은 (주) C의 신용보증사고(2021. 3. 20.) 발생 전인 2020. 9. 8.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2020. 9. 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자. 대구도시공사 사장은 2021. 12. 10.자 N사업 보상협의요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사업에 편입되자 보상금으로 997,402,660원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되어 있던 O조합 명의 대출금 합계 432,000,000원(= 392,000,000원 + 40,000,000원/O조합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서 참조)과 P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을 공제하여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치는 여전히 465,402,660원(= 997,402,660원 - 432,000,000원 - 100,000,000원) 정도가 남아 있다.

[인정 근거] 갑 1-1 내지 갑 9-2, 을 15, 증인 B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대구지법 등기국 2020. 9. 8. 접수 제14499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2020. 1. 30. 회사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며 금전 차용을 요청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고 대구대공원 편입으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이 여의치 않아 그 담보로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선의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있어서 채권회수를 위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내지 가압류 등의 집행보전조치로 발생하는 사업추진상의 어려움은 그러한 조치를 행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이나 변제기의 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이다. 또한 특정 채권자가 당시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회수조치에 적극성을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들 사이에서 우선적 담보제공의 필요성에 관한 차별적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채무자가 사업활동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자금의 유입과 기존채무의 이행기의 연장 내지 채권회수조치의 유예는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고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215 판결 참조), 증인 B의 일부 증언과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기존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또는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고에게 담보를 제공한 행위로서 이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법 등기국 2020. 9. 8. 접수 제14499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

별지

1) 대구지법에 2021. 8. 30. 2021회합119호로 회생개시신청이 접수되어 2021. 10. 20.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결정에 따르면, (주)C는 2020년 약 13억 9,8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2020. 12. 31. 기준 부채 총계 5,637,694,337원, 자산 총계 7,740,607,248원이었으며, 2019. 2.경 및 4.~7.경 임직원들이 회사 내부 시스템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추출하거나 이를 광고대행업체에 몰래 제공하는 정황이 파악되어 고객관리시스템 등을 종료하기까지 함으로써 주력 사업이 중단되고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보유시재와 영업상 현금 흐름만으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다.